

## 2021년 11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 ( '21.11.21. Haiquan Online) 베트남 하이퐁 세관, 베트남 설명절 기간 전·후 통관 검사 강화 계획 발표
  -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설명절 기간 북부 하이퐁항을 통해 통관되는 소비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검사 품목은 동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주류, 식품, 화장품 등임
  - 주요 검사항목은 원산지 정보 및 위조품 여부 등이며 통관검사 강화에 따른 통관 지연 등의 문제 발생 방지 및 효과적인 검사 절차를 위해 TF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힘
  - 베트남은 자국 내 저품질 식품과 식품 정보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 관련된 식품 안전법과 검역 제도는 모든 수입 식품을 포함하여 식품 포장재, 식품 첨가물, 농작물 종자 분야에 적용되며 절차가 까다로우며 미비한 통관 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임

## <<참고> 품목별 검역절차>

### 1) 농산물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병충해 위험성의 이유로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전 위험성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식물검역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 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물보호국은 진행된 위험성 분석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 여부를 평가 및 결정하는 검역 절차를 거친다. 이는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되는 나무 종자, 신선 과일 및 구근(球根), 잔디 및 잔디 종자류가 이에 해당한다.

식물 검역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식물검역소에 식물검역신청서, 수출국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수입 식물 검역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 2) 축산물 및 수산물

축산물과 수산물 수입 시 수입업체는 베트남 수의국(Dept. of Animal Health)에 검역 수속을 등록해야 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는 한국산 닭고기와 그 부속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만 베트남에 수입이 가능하며 검역을 위해서는 검역 등록 신청서, 생산한 시설의 HACCP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가공식품

가공식품 수입 시는 상품도착 5일 전까지 검역기관에 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베트남품질기준(TCVN)에 부합하는 품목인지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검역 신청을 위해서는 검역검사신청서, 품질기준 사본, 통관 서류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 시사점

-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될 뿐 아니라 이 내용이 수출입 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최근 통관검사 강화 계획으로 인해 설명절 기간 수출 통관 애로사항 일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베트남 주요 소비 시즌인 설명절 대목 한국산 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현지화 지원사업(global.at.or.kr)’을 통해 현지 법률 및 통관정보 등의 자문 지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 필요

\*\* 자료원/ 날짜 / 출처

<https://haiquanonline.com.vn/hai-quan-hai-phong-tang-cuong-kiem-soat-hang-tieu-dung-co-nhu-cau-lon-trong-dip-tet-155650-155650.html>

통관문제사례, FTA 이행이슈 관련 등 내용 없어 생략.